

미국 프랜차이즈 통일법에 관하여

- 우리 입법안과의 비교 검토를 목적으로 -



최영홍

법무법인대일 대표변호사, 광운대 겸임교수

우리 법안에는 미국의 통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독자적인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법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으로는 가맹료 및 법 적용 배제의 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의 적절성 여부, 가맹금 반환청구와 관련된 시한설정의 적절성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I. 글을 시작하며

1. 서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 여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측에 관하여 얼마나 충실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4월호에서 프랜차이즈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관계법령을 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공개에 관련된 법조문을 중심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뿐만 아니라 향후 두 국가의 법률 차이를 미리 비교검토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업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적자치 내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입법사항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국내법의 제정에 참고할 만한 것으로 미국의 프랜차이즈및사업기회에관한통일법(Uniform Franchise and Business Opportunities Act: 이하 “통일법”이라 한다)을 소개하고자 한다.¹⁾²⁾

1)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연방법 및 주법의 2원 체제를 갖추고 있고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령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연방차원의 법으로는 자동차나 석유의 유통사업과 관련된 법률과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이 있다. 전자는 법률이지만 그 규율대상이 일부 업

2. 통일법의 제정과정

“통일법”은 1988. 8. 미국의 주법통일전국위원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이하 “주법통일위원회”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성안되었다.³⁾ “주법통일위원회”는 1983년부터 수차례의 회의와 축조심의를 거쳐 통일법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이익형량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다른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들의 이익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미국변호사협회와 프랜차이즈협회, 전국가맹점사업자협회, 북미주증권감독자협회 기타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통일법의 제정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1970년대 초에 12개 주에서 프랜차이즈의 청약과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79년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및사업기회에 관한거래규칙(Trade Regulation Rule on Franchising and Business Opportunities)을 공포하였으며, 그 밖에 23개 주에서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사업기회’를 규율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에서도 그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었다.

II. 통일법의 내용

1. 서

“통일법”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용어의 정의 등 총 12개조의 총칙 조항을, 제2장은 총 2개조의 프랜차이즈 및 사업기회에 있어서 최소한의 행위준칙을, 제3장은 총 6개조의 프랜차이즈 판매 즉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에 관한 조항을, 제4장은 사업기회의 판매에 관한 조항을, 그리고 제5장은 총 12개조에 걸쳐 동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범시행에 관한 조항을 각기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장별로 우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와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총칙

(1) 정의

통일법은 제1장제1조에서 총 21개항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동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써 실제 우리 법제에 참고가 될 만한 것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가맹료 등에 대한 정의가 있을 뿐이다. 먼저 “프랜차이즈(franchise)”에 대

중에 한정되어 있고 후자는 전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지만 법률보다 하위규범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차원의 범으로는 대부분의 주가 프랜차이즈관련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법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형평성보다는 지나치게 거래당사자간의 정치적 힘의 역학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 통일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의해 작성되어 위와 같은 미국 법원의 한계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그 밖에도 소개할 만한 법안으로는 북미증권감독자협회(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Inc.)가 1990. 8. 30. 채택한 모범프랜차이즈투자법(Model Franchise Investment Act)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3) 주지하다시피 “주법통일위원회”는 각 주의 법률이 상이한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 각 주에 그 채택을 권고해 온 전문가 단체이다. 그 동안 지속적인 상사관계 중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권위와 공정성을 지켜가며 법안을 만들어 왔고,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거의 모든 주의회로부터 승인된 미국 통일상법전을 들 수 있다.

해서는 “①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실질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마케팅 계획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나 유통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부여받고, ② 위 마케팅계획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실질적으로 연관되며,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체결되는 2인 이상 사이의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다음으로 “가맹료(franchise fee)”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에 의해 새로 가맹사업에 참여하거나 기존 가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요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이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권리부여나 교육훈련 등의 대가인 지급금이나 예치금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동 법에서는 가맹료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음의 금전, 즉 ① 적정한 재고 상품에 대한 적정한 도매가격에 의한 대금, ② 부동산이나 집기, 비품의 적정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 ③ 위탁매매 상품의 적정한 대금, ④ 적정한 도매거래에 필요한 수수료나 실비 변상금, ⑤ 기타 쇼핑센터의 입주자가 쇼핑센터에 지급하는 적정한 임차료나 연합광고비 등은 가맹료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⁵⁾ 그 밖에도 우리가 지역본부라고 부르고 있는 Master Franchise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하위의 가맹본부에게 그의 계산으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분쟁해결 방법

통일법은 “가맹사업거래의 당사자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에 대하여 중재나 조정 등 판결 외의 방법에 의해 해결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104)”고 규정하여 소액의 다양한 품목과 관련된 분쟁이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 해결할 길을 열어 놓고 있다.

(3) 다른 법과의 관계

또한 통일법은 민사, 행정 및 형사법규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이들 규정과 타법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본 법은 능력이나 사기, 부실표시, 강박, 착오 등 일반 법원칙 및 기타 형사법규에 의한 처벌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05)”고 규정하고 있다.

(4) 비양심적 조항의 적용배제

이는 통일법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이다. 동 법은 “법원은 계약내용의 일부가 비양심적인 경우에는 해당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해당부분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6)”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3. 일반 행위준칙

통일법은 가맹계약의 당사자에게 신의칙 의무(Duty of Good Faith)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

4) 프랜차이즈를 기본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방법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 법의 여러 곳에서 프랜차이즈의 ‘판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판매하는 것은 용인될지라도 계약 자체를 판매한다는 것은 개념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법체상으로는 프랜차이즈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가맹점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총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가맹점운영권’ 또는 ‘가맹사업권’이라고 칭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5) 이 점은 우리 법안이 가맹금의 내역을 상당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쟁정책

여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 신의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01)”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신의칙이란 사실에 있어서의 정직성 및 공정한 거래에 대한 합리적 상거래기준의 준수를 의미한다.⁶⁾

한편 일반 행위준칙의 하나로서 “계약당사자는 각자 관련 단체를 구성하거나 관련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202)”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동일 가맹사업의 여타 가맹점사업자와는 물론이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연대나 제휴도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한 것이다.⁷⁾

4. 가맹사업의 공개⁸⁾

(1) 청약회람서의 작성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에 앞서 가맹본부의 인적 구성과 재무상태 등에 관한 여러 정보와 계약서 견본 등이 포함된 청약회람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⁹⁾ 이 청약회람서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03).

- ① 가맹사업,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식표명
- ② 가맹본부의 최근 3회계년도의 손익보고서를 포함하여 가장 최근에 회계검사를 받은 가맹본부의 재정정보서 사본
- ③ 가맹사업에 관하여 사용될 개별 계약서 견본
- ④ 가맹희망자가 수령일자와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할 두 쪽의 영수증(그 중 하나는 작성된 후 가맹본부가 분리하여 보관함)

위 청약회람서의 표지에는 ‘관계당국은 이 회람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을 승인, 추천 또는 보장하거나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음’이라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그 회람서가 마치 당국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부여 받은 듯이 오도될 소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6) 통상적으로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 제2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더 강한 의무, 즉 영미법상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준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아무런 계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맹사업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에,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견제로 상호간에 횡적 연결체구조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 볼 때 본 조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아쉽게도 가맹사업자 단체의 주장이 우세하여 금번 우리 법안에는 삽입되지 못했다.

8) 제3장에서는 프랜차이즈의 판매와 판매청약을 규율한다. 즉,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운영을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에 앞서 주당국에 등록까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직접 동 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기타 강력한 법시행권을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 제안 당시 발효중이던 프랜차이즈 관련법은 자율공개를 요구하는 1979년의 연방거래위원회 규칙을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공개요건을 규정한 Oregon주와 Michigan주의 법률,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에 앞서 완전한 등록을 요구하는 12개 주(California, Illinois, Indiana, Maryland, Minnesota,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의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법률은 New York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1970년대 초에 제정되었다. Hawaii주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당국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과 청약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ichigan주는 1984년에 등록에 관한 법을 폐지하였지만, 사전공개와 사기방지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 두고 있다. 나머지 35개 주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프랜차이즈의 등록이나 공개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위 12개 주는 등록절차에서 공개서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주는 금지된 계약조항이 있는지를 검색하기도 한다.

9) 이 청약회람서에 해당하는 문서를 우리 법안에서는 정보공개서라고 지칭하고 있다.

(2) 청약회람서의 사전공개

누구든지 위 청약회람서를 다음에 정한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짜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는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수 없다(\$302a).

- (i)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전
- (ii) 가맹본부가 가맹점운영권의 대가를 받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전
- (iii)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를 처음 면담한 날

(3) 계약서 등의 교부의무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하기 5영업일 전에 가맹계약서 기타 관련 계약서의 완전한 사본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 의무는 가맹희망자의 요구에 의해 계약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03d).

(4) 사전공개 의무 위반의 치유

가맹계약관계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임을 감안하여 통일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대가나 서류를 조건없이 즉시 반환할 경우에는 제302조 a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 하지는 치유된다(\$302e)”고 규정하고 있다.

(5) 청약회람서의 개정

가맹본부는 청약회람서의 정보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청약회람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의 대가나 서명한 계약서를 받기 2영업일전에 기존판을 제공받

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새로운 개정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위 2영업일전 제공조건을 포기할 수 있다(\$304).¹⁰⁾

(6) 관계당국에의 통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지역본부 포함)의 상호, 전화번호 및 주된 사무소의 주소가 기재된 통지문을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위 통지문의 기재내용은 변경신고가 있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관계당국은 위 통지문의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계당국은 취소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05).

(7) 공개의무의 면제

이상의 공개의무는 가맹본부의 영업이 소규모이거나 기타 의무를 강제하지 아니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이처럼 공개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301a):

- (가) 가맹본부에 의해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 (i) 가맹본부가 최근 1년 동안 전국적으로 3인 이하의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 (ii) 가맹본부가 해당 프랜차이즈에 관하여 광고물을 발간하지 않은 경우
 - (iii) 가맹점사업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별도의 가맹본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가맹본부측에 의해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

10)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경우까지를 배제하면 가맹희망자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웬스레 그 기간만큼 유효한 계약체결을 지체시키기 때문이다.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쟁정책

로서

(i) 가맹점사업자나 그 임직원, 동업자 등이 2년 이상 동종 가맹사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ii) 가맹사업개시후 첫 해 동안에 올린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그의 전체 매출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다) 가맹본부의 임직원, 동업자, 그 자회사에 대하여 공개모집방식에 의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라) 기존 가맹점포와 교환된 가맹점으로서 교환 조건이 파산법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

(마) 정부기관에 의한 경우

(바) 하위 가맹본부가 전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모집하는 경우

(8) 협상에 의한 변경의 허용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청약회람서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당사자가 협상을 거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그 변경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306). 이 또한 가맹계약이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임을 존중한 조항이다.

5. 사업기회(생략)

통일법은 제4장에서 사업기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업기회는 일정한 사업활동을 할 기회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와 유사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자는 가까운 장래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회부여자가 강력히 제시하는 점 및 부여받은 기회가 부여자의 영업표지와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와 차이가 있어 그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6.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

(1) 규칙제정권

(가) 관계당국은 통일법 제105조, 제106조 및 제2장의 일반 행위준칙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501a).¹¹⁾

(나) 또한 관계당국은 본 법에 배치되지 않고, 가맹희망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의무에 관한 제 302~305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502b).

(2) 송달절차

가맹본부는 본 법에 의해 관계당국으로부터 송달받을 자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관계당국을 송달받을 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502).

(3) 서류보관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집과 관련되는 서류(가맹희망자가 공개관련 서류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포함)를 모집일로부터 4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위 서류를 사진이나 전자

11) 우리 나라의 경우 관계당국으로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될 수 있겠으나, 금번 법안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공정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향후라도 관련 시행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업무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매체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4) 정보 접근

본 법에 의해 관계당국에 제출된 서류는 공개 문서이다(\$504). 따라서 관계당국은 일반인의 열람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5) 부실표시 금지

가맹본부는 중요사실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도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여부에 대하여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중요한 정보로 본다. 위 정보의 중요성 여부는 가맹희망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505).

(6) 민사책임

통일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이에 근거한 명령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적절한 구제수단을 가진다(\$506).¹²⁾ 법원은 본 법에 의한 소송 기타 구제절차에서 승소한 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7) 입증책임

본 법에 의한 민사소송 기타 절차에 있어서 그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507).¹³⁾

(8) 시효

본 법의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 기타 절차는 위 반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508).

(9) 재판관할

당사자는 관할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이나 절차를 당사자와 주요사실이 존재하는 지역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편한 관할법원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509).¹⁴⁾

(10) 관계당국에 의한 소송 등

관계당국은 본 법 제3장 또는 제505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직접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법무장관에게 그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적법행위의 이행을 소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인의 소명이 있으면 항구적 또는 임시적인 금지명령 기타 적절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고, 피고의 재산을 관리·보전하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계당국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없다.

또한 관계당국은 제3장 및 제505조의 이행을

12) 이 점이 우리 법제와 크게 다른 점 중의 하나이다. 우리 법제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선행된 후에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구제에 크게 미흡하다.

13) 이는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일반원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점에도 우리 법안에는 이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

14) 따라서 합의관할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 우리 법제상으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해석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쟁정책

강제하거나, 규칙이나 명령의 발령, 명령의 취소 기타 법 위반사실의 확인 등을 위해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사실조사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할 의무는 없다.

관계당국은 법무장관에게 법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통보한다. 법무장관은 위 통보자료를 참작하거나 참작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추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510).

(11) 수수료 등의 부과

관계당국은 제305(a)에 의한 통지시 25\$, 제305(b)에 의한 변경통지시 10\$의 수수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고 기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복사비나 송달료를 부과할 수 있다(\$511).

(12) 형사책임

가맹점사업자의 모집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로 제3장을 위반한 자는 사기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512).¹⁵⁾

III. 글을 마치며

이상 간략하나마 국내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

화에관한법률> 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그와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미국 통일법의 내용을 일별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로 통일법과 우리 법안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두 법안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우리 법안에는 통일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독자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법안작성의 기초업무를 담당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 덕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전 여론조사와 정부부처간의 협의는 물론이고 관련사업자단체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까지를 거치며 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법안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아무튼 우리 법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으로는 대략 ①가맹료 및 법적용 배제의 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의 적절성 여부, ② 당사자의 협의약정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은 경우까지도 다시 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③ 가맹금 반환청구와 관련된 시한설정의 적절성 여부, ④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의 존치 여부, ⑤ 손해배상청구 및 채판상 주장제한의 적절성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쟁점들은 앞으로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정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

15) 이 조항은 우리의 법체계와 사실상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마련중인 우리 법안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기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법에서는 그러한 고발요건이 없고,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법제상으로도 검찰이 직접 사기죄를 적용하여 소추할 수는 있다. 그러나 통상 공정거래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기다려 온 것이 우리 검찰의 실무관행이다.